



# 의안검토보고서

---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안건명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4. 검토의견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이병연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 하도록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대전광역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위원의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변경함(안 제9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정책기획관 합의
-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마. 입 법 예 고 : 2020. 12. 18. ~ 2021. 1. 8. / 접수 의견 없음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의 마련 및 구매협조 등에 관한 사항 신설과, 현행 조례상의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위원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5조의 2는 신설조항으로,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매뉴얼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 내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의 사업장 등에 대해 매뉴얼의 배포 및 사용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안 제9조는, 현행 조례상 운영 중인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위원 수와 그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행 15명 이내의 위원 수를 10명이 늘어난 25명 이내로 증원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일자리경제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회계과장으로 하는 한편, 위원 자격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무적인 수준에서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반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처리 매뉴얼의 마련 및 그 사용의 강행규정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용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강화하도록 그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율 증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업무처리 매뉴얼에 대한 강행규정의 범위가 대전시 내부조직에 국한되고, 그 외 지역 공공기관 및 일반사업장은 협조에 불과하므로, 매뉴얼의 실효적인 활용을 통한 구매촉진을 위해 대전시 내부조직에 대해서는 매뉴얼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역의 공공기관 및 일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용 협조 및 홍보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